강 남 구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제목 지방세 환급금 반환결정 결의 및 통지

1.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다음과 같이 반환결의하고, 납세자에게 환급통지하고자 합니다.

가. 납 세 자 : ****

나. 환급금액 : 부동산취득세 1건 12,972,490원

- 과오납금 : 12,915,880원
- 환급이자 : 56,610원

다. 환급사유 : 부동산취득세 신고납부 후 임대사업자 감면으로 부과취소

라. 결 의 일 : 2015. 7. 3

붙임 1. 지방세환급금 반환결의서
2. 환급반환결의내역서
3. 부동산취득세 경정청구 결정서. 끝.

주무관 김미경 세무행정팀장 이규화 세무관리과장 신오식 기획경제국장 전결 07/03 문경수

협조자

시행 세무관리과-15013 ( ) 접수 ( )

우 135-705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전화 02-3423-5604 /전송 02-3423-8832 / dulrik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